

자체평가 규정

(제정 2009. 9. 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 학칙 제79조에 따라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체평가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자체평가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자체평가”란 본교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자체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자체평가의 범위 및 시기) ① 본 규정의 자체평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성과 평가 <신설 2017.12.1.>
2. 대학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역량 종합평가
3. 특정학문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분야평가
4. 각 학사단위(단과대학 및 대학원 등)에 대한 평가
5. 대학 부속 혹은 부설기관(각종 연구소 포함) 평가
6.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한 교직원 업무 평가
7.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8.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혹은 단위에 대한 평가

② 자체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수시평가는 대학평가총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제5조(자체평가위원회) ① 대학의 자체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자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5.10., 2015.8.26.>

② 평가위원회는 대학평가총괄위원회(이하 “총괄위원회”라 한다)와 대학평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로 구성한다. <신설 2015.8.26.>

제6조(총괄위원회의 구성) ① 총괄위원회는 부총장, 본부장, 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5.10., 2015.8.26., 2017.9.1.>

② 위원장은 부총장이 된다. <개정 2012.5.10., 2015.8.26.>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5.10., 2015.8.26.>

④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획처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17.9.1.>

⑤ 삭 제 <2015.8.26.>

제7조(총괄위원회의 기능) 총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8.26.>

1. 자체평가 기본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에 대한 인식확산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관련 위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의 건의와 총장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신설 2012.5.10>
6. 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중요 사항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2.5.10.> <개정 2015.8.26.>

②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 <개정 2015.8.26.>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8.26.>

④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15.8.26.>

⑤ 삭 제 <2015.8.26.>

⑥ 삭 제 <2015.8.26.>

제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2. 자체평가제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개발과 연구
3. 자체평가(서면평가, 현장평가)의 실시
4.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의 집필
5. 그 밖에 자체평가에 부수되는 업무수행

제10조(소집 및 의결) ① 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자체평가의 절차) ① 운영위원회는 평가 실시 전에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총괄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다. <개정 2015.8.26.>

② 총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가 기본계획은 교내 각 관련 부서에 통지하며, 각 부서는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등 평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6.>

③ 운영위원회는 자체평가 자료를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하여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 시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총괄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한다. <개정 2015.8.26.>

④ 총괄위원회는 보고된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5.8.26.>

제12조(이의신청) 평가결과에 대해 각 관련부서에서는 필요한 경우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이의신청은 총괄위원회에서 이를 재심하여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8.26.>

제13조(결과의 활용) 총장은 자체평가 결과를 장단기 발전계획 및 전략 수립, 대학특성화 정책 반영, 인센티브 부여, 포상, 각종 대학내부 재정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결과의 공시) 총장은 대학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체평가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지침)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은 1999년 12월 14일 제정한 평가규정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